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6 | 2024.01.02. (2023.12.26~2024.01.0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12.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26~01.01)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세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늘 함께 하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의 세종Law Focus 수신 고객 여러분,

多事多難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지난 2023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으며, 새해에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은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와 현장요구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과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공연장 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② **인공지능(AI) 선제 대응**(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기술(R&D) 개발 지원), ③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 개선), ④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국제공조 강화로 케이(K)-저작권 단속 확산, 전략적 통상정책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보호 규범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으며,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입법예고된 주요 법령으로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보관시설)를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중요 원재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그리고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출자구조, 최고직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외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장외파생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환장외파생 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9일 회기 종료 예정인 제411회임시회는 이번주 교육위의 법안 심사 및 의결, 산자중기위에서는 1/3(수) 10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안덕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8
-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중소벤처기업부) 10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의결(금융위원회) ...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기획재정부) 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6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환경부).....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7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9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20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법률(금융위원회)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3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5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6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공정거래위원회) 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 31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3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32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33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3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3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4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37
-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27인) 3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3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3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40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12.28)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4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4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43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6~2024.01.01) [바로가기](#)

- **[회사일반]** 임기만료 후 후임 감사 선임 전 구 감사의 업무수행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확인한 사건
- **[에너지·자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소송]**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 **[노동]** 대법원에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2023-12-27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으며,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문체부-인터폴-경찰청 업무협약('21. 4.),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범부처협의체 출범('23. 3.)

** ▲인도네시아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비(IPTV) 운영자 구속('23. 11.)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23. 12.)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와 현장요구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과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준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공연장 밀캠(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②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기술(R&D) 개발 지원

<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 ①(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필요
- ②(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③(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④(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한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 (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 예외가능)

③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 개선

④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 국제공조 강화로 케이(K)-저작권 단속 확산
- 전략적 통상정책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보호 규범 강화

세계 5대
저작권 강국 실현

기대효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공정한 선순환 체계 조성으로 글로벌 저작권 강국 실현

창작자 권익 강화



소의 장르 보호와 약자 보호 환경
개선으로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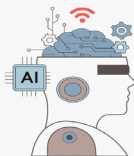


새로운 콘텐츠 유통·이용 환경에
부합하는 창작자 지원체계 마련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미래 저작권 경쟁력 확보



선제적 AI 저작권 기반 마련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관련 산업발전 촉진



저작권 유통·관리 체계 개선으로
투명한 산업기반 구축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종합 정비와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

한국형 저작권 모델 세계화



국제공조 등 K-저작권 국제적 단속
강화로 해외 불법유통 근절



교류 확대와 전략적 통상협상으로
저작권 글로벌 보호체계 구축



해외 음원 유통구조 파악 등
국내 음원 플랫폼 현지 서비스 지원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함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임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 개+알파(α))을 선정하여 상담(컨설팅)·인력·장비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 예정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 [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
- [인력양성]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
-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상담(컨설팅) 등 추진 지원.

③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지능형(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지능형(스마트)공장+지능형(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형(모델) 발굴·확산 등 추진 예정

④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 강화
-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인센티브) 적극 부여

-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 계획
-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

<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추진 목표

- ◆ '24~'25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추진
- * [사고사망만인율] ('22년) 0.43‰ → ('26년) 0.29‰

기본 방향

- ◆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컨설팅·기술지도, 인력·교육, 장비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 ◆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및 인프라 확충 병행

추진 분야		세부 과제
1	산업안전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①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② 대진단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④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⑥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⑦ R&D 지원 강화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	⑧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⑨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⑩ 안전보건산업 육성

⇒ '24년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10대 과제' 역점 추진,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 추가 마련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안)

산업안전
대진단

-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진단 (83.7만개 전수)

-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 민관합동 진단 추진

사업장
분류

- (중점) 8만개 + α
-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 외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

■ 맞춤형 지원 연계 : (중점) 단계적 패키지 지원 / (일반) 신속 개선유도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	일반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외)
▪ 단계적 진단·구축 + 패키지 지원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② 위험시설 및 공정 등 개선지원 → ③ 공동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지원 ▪ 중점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집중지원(우선 배정) *('24년 지원물량) 컨설팅 2.8만개, 시설개선 1.5만개, 공정개선 4천개 등	▪ 자체적 개선유도 및 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 현장여건에 따라 시설·공정 개선, 전문인력 지원 등도 연계 ▪ 필요시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 추진 •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개선 도모 •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자체 개선지원 보완 *('24년 지원물량) 교육 7.2만개, 기술지도 21.6만개 등

⇒ '24년중 지원 및 개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지원물량 확충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
기준」 개정안 의결

2023-12-27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될 예정이다.

*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함.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i) 자산 500억 원 이상, (ii) 자본잠식률 50% 미만, (iii)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음.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함

*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 확대에 대해서는 12.19일 기사행

②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정비

-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하여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
-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하여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 확대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주요 제도정비 내용 >

등록의무 완화		인센티브 확대	
구분	개선내용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 유지(의무등록)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특례 유지
② SPC → 자산보유자	의무등록→임의등록	② SPC → 자산보유자	특례 신설
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	의무등록→임의등록	③ 담보신탁	특례 신설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無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예:신탁회사)에게 신탁
--	---

③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도입

-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함
-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④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

-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하여야 함
-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 면제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위험보유 의무 면제
- 그 외에도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유형* 열거

* ①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CBO, ②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③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

⑤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정비

-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함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허용
-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	2024-06-27 시행예정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경제안보,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위험, 공급망 위기상황, 위기품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제2조)
- ②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7조)
-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함 (제10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 등을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 ⑤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관세정보의 제공,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⑥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해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기품목의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위기대책본부 설치·운영, 관세지원, 긴급조달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함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 ⑧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운영, 지원대상·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⑨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6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성격, 자산총액 대비 인력 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겸직금지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36조의7제5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12-28 시행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환자나 질병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慢性疾患) 등과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분만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 등의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5조제5항 신설, 제5조의4 신설, 제7조제4항제2호, 제8조제3항 등)

환경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2023-12-31 시행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2호가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 2026년 1월 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정하고, 해당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

이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감면기준, 재정지원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 (제3조)**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등을 민간의무생산자로 정함

②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등 (제4조 및 별표 1)**

-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검토하도록 함

③ **과징금 감면 기준 등 (제7조)**

- 천재지변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④ **재정지원의 대상 등 (제8조)**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28 시행
(다만, 제16조의3제2항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의 처리를 위한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

이에 따라,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품목 배출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리튬이차전지 등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늘리고, 허가업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던 1회용 컵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정비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5조의4제1항제1, 제16조의3제2항제1호, 제16조의5, 제16조의9, 제31조제1항제3호 등)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01 시행

(다만,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됨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측정하여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하려는 것임 (제9조의8 제3항 신설, 제3장제25조의2~10 신설, 제31조제2항제1호, 제37조 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01 시행

(다만, 제10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및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시점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서 ‘14일’이 지난 후로 늦추며, 조기재취업을 했더라도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의 조기재취업과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서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하며, 특례 적용 기간은 부모 공동 육아휴직 ‘세 번째 달까지’에서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고, 늘린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350만원(네 번째 달), 400만원(다섯 번째 달), 450만원(여섯 번째 달)’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19조제1항, 제21조의3제3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의3 등)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24-06-27 시행예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9조제8항, 제29조제9항, 제40조제1항제14호, 제86조의2제5항 신설, 제111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4-27 시행예정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2호가목, 제2조제8호가목, 제6조제3항, 제9조 등)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3-27 시행예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택의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호가목,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4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4-01-01 시행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조정함 (제16조제1항제4호)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4-01-01 시행

(다만, 일부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32조의10 신설, 제38조의2 신설, 제83조제3항, 제83조의2~4 신설, 제92조제1항제1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26 시행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임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1 제7호나목, 별표 3 제1호가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0월 15일에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반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제2항)
- ②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함 (제34조)
- ③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부칙 제2조제1항)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26. ~2024.02.26.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안 제7조)
 -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 ②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안 제18조)
 -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확인 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26. ~2024.02.26.
--------------------	--------------------------------------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 ②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 (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27.
~2024.02.07.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 시행령 제78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
- ② 표준제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위탁 범위 조정 (안 시행령 제116조)
 - 고용부로 위원회 운영주체를 이관하고, 공단은 분야별 위원회 운영 등 일부 역할 수행
- ③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 (안 시행령 별표 24, 25)
 -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혼합기, 파쇄기 등을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추가
 - 법정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 포함
-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한계 적용기준 명확화 (안 시행령 별표 29)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요건 중 사업장 수가 ‘반기’ 기준이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
- ⑤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 (안 시행령 별표 30)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집계하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 인원제한 기준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tel:044-202-8997)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27.
~2024.02.07.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하고, 건강진단의 질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문진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 현행화 (안 제109조 및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25조에서 규정한 타 법령의 명칭, 조문번호 등 현행화
- ②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대상 추가 (안 제20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
- ③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안 제203조)**
 - 벤젠 등 고독성 물질로써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인 7종은 현행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면제기준(6개월 이내)을 유지하되 그 외 석면, 야간작업 등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준을 “12개월 이내”로 완화
- ④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 (안 제209조 및 제211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집계하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 인원제한 기준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
- ⑤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대상 기계 확대 (안 별표 5)**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
- ⑥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개선 (안 별표 24)**
 - 제1차 검사항목(필수)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삭제하고, 임상검사 및 진찰에서 참고치를 벗어나거나, 심혈관계 또는 신경계 이상징후 등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2차 검사항목(선택)으로 변경
- ⑦ **제조 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시 항목 변경 (안 별지 제70호서식)**
 -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이 아닌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 기재
 -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이 아닌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
- ⑧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안 별지 제91호서식)**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 승인여부 검토시 사실확인을 위해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추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http://www.mhl.go.kr)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23.12.26.
~2024.02.25.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 항목·요건 확대,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장착,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전조등 자동 점·소등 의무화, 자동명령 조향기능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동등 점등기준, 중·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 등화장치 광도 오차기준 등을 완화하고,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의 개정 (안 제2조)
- ② 초소형특수자동차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개정 (안 제2조, 제6조, 제26조, 제90조)
- ③ 자동제어제동 작동에 따른 의무 점등 감속도 범위를 완화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제동등 점등 요건 완화 (안 제15조, 별표 5의2)
- ④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기준 신설 (안 제18조의4 신설)
- ⑤ 모든 자동차에 보조제동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 (안 제43조)
- ⑥ 자동차 소화설비 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인용 (안 제57조)
- ⑦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조건에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록 항목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확대 (안 제56조의2, 별표 5의25)
- ⑧ 기준 적용의 특례 항목 추가, 인용조문 수정 현실화, 실효성을 상실한 특례 규정 삭제 (안 제114조)
- ⑨ 속도계 표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 (별표 5의12)
- ⑩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거리기준 완화하고,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측각도 내 관측광도를 자동차규칙에도 규정함으로써 명확화 (안 별표 5의17, 별표 5의18, 별표 5의21, 별표 5의22)
- ⑪ 원격제어운전, 위험완화기능 등 자동명령 조향기능의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규정 (안 별표 6의2)
- ⑫ 야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자동 점·소등을 의무화하고 주간주행등 점등 시 후미등의 의무 점등 기준 신설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 (안 별표 6의4, 별표 6의8)
- ⑬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 연동조건에 따른 차폭등 및 후미등의 표시장치 예외 규정 개정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 (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4)
- ⑭ 국제기준에 추가 등재된 발광소자광원에 대한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을 추가 (안 별표 6의21)

- ⑮ 양산자동차 등화장치의 허용 편차 요건을 모두 $\pm 20\%$ 를 허용하는 등 등화기준 완화 (안 별표 5의36, 별표 6의3, 별표 6의5, 별표 6의6, 별표 6의7, 별표 6의9, 별표 6의10, 별표 6의12, 별표 6의13, 별표 6의15, 별표 6의16, 별표 6의17, 별표 6의18,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6의31, 별표 6의32, 별표 30의8, 별표 32의2)
- ⑯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 경고단계에서 속도 감속량 제한기준을 삭제 (안 별표 7의8)
- ⑰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하는 후부안전판의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시험하중 및 설치 강도기준 강화 (안 제19조, 별표 13)
- ⑱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명확화 (안 별표 16)
- ⑲ 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국제기준 완화에 따라 전자파 방사기준,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내성 기준 완화 (안 별표 24)
- ⑳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조문명 수정,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어휘 명확화 등 조문 수정 (안 제65조, 별표 5)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mailto:국토교통부_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50,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28.
~2024.01.19.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보관시설)를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 배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서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 (안 제3조제4항제3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mailto:국토교통부_첨단물류과) (전화: 044-201-4013, 팩스: 044-201-5601)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3.12.27.
~2024.01.16.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중요 원재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안 제3조의2 신설)
-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한정 ([별표1] 신설)
 - 중요사항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내용, 위반행위 유형 지정 ([별표2] 신설)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tel:044-200-4406) (전화: 044-200-4406, 팩스: 044-200-4464)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28.
~2024.02.06.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출자구조, 최고직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봄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봄
- ② 동일인 판단의 예외 사유 (안 제38조의2제3항)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요건은 각 호로 정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tel:044-200-4933) (전화: 044-200-4933, 팩스: 044-200-497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29.
~2024.02.0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장외파생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환장외파생 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간 외환장외파생 거래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명확화 (안 제7조제4항제10의2호)**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따라 외환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 ②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 (안 제184조제1항)**
 -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02-2100-2652, 팩스: 02-2100-267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일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산업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24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2023-12-29 발의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물류·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3조 및 제35조제2항 등)		

- ② 개인·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라 위치 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 정보사업의 개념으로 융합 (안 제2조 등)
- ③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 (안 제5조, 제7조 등)
- ④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2항)
- ⑤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표시·통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안 제16조제2항 등)
- ⑥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수탁자로 지위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정 중 수탁자에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 신설 (안 제20조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제3항)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3-12-27 발의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제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음란·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 그 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음란·퇴폐 광고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 등)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2-27 제출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 (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②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 (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③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 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3-12-28 발의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제18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2023-12-28 발의

현행법은 소금의 생산이나 제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전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2023-12-27 발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 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이 법 제정 이전에 국내에 유통되었거나 유해성심사를 받았던 ‘기존화학물질’과 그 외의 화학물질인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생산된 화학물질임에도 환경부의 고시 전에는 현행법에 따른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후단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 외에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는 현재 현행법 시행규칙에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을 뿐 열분해유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부재함

또한, 열분해유 생산을 통해 실제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성석유로서 열분해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열분해유를 생산하기 위한 재활용 원칙 및 품질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열분해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열분해유 생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원칙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

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 ·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현행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화학물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고자 함 (안 제104조 후단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3-12-26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분리 · 수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 · 적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열분해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의 기여도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 · 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2023-12-28 발의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1주간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연장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1주·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53조 및 제54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27인)

2023-12-27 발의

그간 교통정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또한, 현행「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②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 ④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 (안 제17조)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 (안 제18조)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안 제24조)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 ⑨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2023-12-28 발의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섬과 육지를 이동할 때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해 항공기가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항공기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2023-12-29 발의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교환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 (안 제47조의1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3-12-29 발의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47조의4 신설)
- ②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12.2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12.28.) 심의안건 요지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용우의원등 10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3조의3 신설 및 제446조)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의 평균 수명 향상을 이루어 왔으나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과학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먼저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함

이에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24조의2 신설)

- ②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③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안 제24조의3 신설)
- ④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안 제7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되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당시 그 존속기한을 이 법 제정 당시 시행일('19.2.14.)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여 그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역별 미세먼지 조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의 일관된 추진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26.2.14.) 존속되도록 함 (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②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2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교육위	법안소위	1/4(목) 13: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4(목) 17:00	- 의안 철회 동의, 청원 심사기간 연장 - 법률안 등 의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3(수) 10:00	- 국무위원 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3(수) 09:30	제2차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대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5(금) 13:00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i-SMR의 역할 및 국내외 사업화 추진방안 논의	이원욱, 김영식 의원실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자료집 등	1/3(수)	「금주의 서평」 제660호 발간 - 도서명 : 심플 라이프 - 저 자 :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	국회도서관	
	1/4(목)	「현안, 외국에선?」 제73호 발간 -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5(금) 10:00	「저출산 및 고령화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분석」 전문가 간담회 -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이해 및 OECD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17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26(화) 14:00	2023 KBEPA 협회 5주년 기념식 및 블록체인정책포럼	박영순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26(화) 14:00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 국회 토론회 -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신현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28(목) 10:00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제4차 -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12/28(목)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 제20호 발간 -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국회사무처	
	12/27(수)	「금주의 서평」 제659호 발간 - 도서명 :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 저 자 : 최태현	국회도서관	
	12/26(화)	「NABO Focus」 제68호 발간 -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12/27(수)	「NABO Focus」 제69호 발간 -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주요 내용		
	12/27(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26.~2024.01.0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26(화)	회사일반	임기만료 후 후임 감사 선임 전 구 감사의 업무수행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확인한 사건
12/27(수)	에너지 · 자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27(수)	소송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12/28(목)	노동	대법원에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2/28(목)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